

나. 주요내용

○ 일반주거지역 변경(세분)결정

구분	면적 (㎡)			구성비 (변경후)
	변경전	변경후	증감	
계	6,869,455	6,869,455	0	100.0%
(세분)결정 전	6,745,110	0	감 6,745,110	0.0%
제1종	54,145	448,057	증 393,912	6.5%
제2종	7층 이하	50,875	증 3,277,423	48.4%
	12층 이하	0	증 1,089,202	15.9%
제3종	19,325	2,003,898	증 1,984,573	29.2%

○ 일반주거지역 종별 건축규모

구분	건폐율(%)		용적률(%)		주거형태
	변경전	변경후	변경전	변경후	
제1종	60	60	300	150	저층(4층 이하) 주택
제2종				200	중층(7층 이하) 주택
					중층(12층 이하) 주택
제3종		50		250	중·고층 주택

3. 심사결과 : 의견 없음

영등포구문화재(延齡君神道碑:肅宗王子碑)반환요청에대한건의문(안)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2. 21.
발 의 자 : 고현순 의원 외 5인

1. 주문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유일한 문화재로 볼 수 있는 延齡君神道碑(肅宗王子碑)가 당초 소재지인 영등포구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반환 받아 소중한 문화재로서 관리코자 함.

2. 제안이유

- 현재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야외에 보관되어 있는 延齡君神道碑(肅宗王子碑)는 원래 영등포구 신길7동 대방초등학교(신길동 1444번지)의 교정 앞 묘역과 함께 있었던 문화재였으나, 1940년 경성지구 구획정리계획에 따라 묘역은 예산군 덕산면으로 이장하고 신도비만 남게 되었으며,
- 개인 소유가 불가한 이 神道碑마저 어떻게 개인 소유(배성관-골동품상)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, 1967년 8월 3일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어 현재 보관되고 있습니다.
- 본 문화재는 원래의 위치에서 보존되고 유지될 때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더구나 우리 영등포구가 한강 이남지역의 중심도시임에도 지정문화재가 1점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
- 우리 구에서의 유일한 문화재가 될 연령군신도비(延齡君神道碑)를 원래 있던 장소로 이전 복원하여 보존해야 함이 타당하기에 다음과 같이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함.

문화재(延齡君神道碑 : 肅宗王子碑) 반환 건의문

□ 연령군신도비(延齡君神道碑) 현황

- 연령군(1699-1720) : 조선 제19대 숙종왕의 6남으로서 5위도총관을 지냄
- 건립연도 : 1720년(숙종46년)
- 건립장소 : 영등포구 신길7동 대방초등학교 교정 앞(구 금천현 번당리)
- 건립경위 : 조선 제19대 숙종왕 46년(1720년) 연령군이 병환으로 21세에 자식도 없이 요절하자 숙종이 명을 내려 건립
- 묘역 : 1940년도 경성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으로 이장하고 신도비만 남음
- 규모 : 높이 2.48m, 길이 4.28m, 너비 2.60m
- 이전경위
 - 현재 보관장소 :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육사박물관 야외
 - 기증 이전당시 소유자 : 배성관 (당시 82세, 골동품상)
 - 보관경위 : 1967. 8. 3. 배성관이 육사박물관장에 기증
 - 골동품상(배성관) 입수경위 : 알 수 없음(당시 박물관장 회고록)
- 문화재 지정
 - 1980. 6. 11. 서울시 유형문화재 43호로 지정
 - 처분권 : 문화재청(국유문화재)
 - 소유자 : 국(유지관리 : 육군사관학교, 노원구청, 서울시, 문화재청)

□ 반환예정지

- 영등포구 신길동 1444 대방초등학교 교정 또는 당초 소재 인접지 (약 20평 내외)
- 위 延齡君神道碑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문화재(神道碑)는 향후 영등포구에서 유일한 문화재 소재 장소로써의 문화재가 될 것이며, 문화재란 원래 장소에서 복원 또는 보존되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며, 그것이 문화재 보존의 목적일 것으로 판단되어,
-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영등포구 전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회 전 의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본 문화재(神道碑)가 영등포구에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.

2003. 2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